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1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3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9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4. 4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,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가정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순증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표 개정 (안 제2조 및 별표 3)
 - 정원의 총수 : 1,288명 → 1,302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261명 → 1,275명
 - 일반직 총계 : 1,282명 → 1,296명
 - 6급이하 소계 : 1,211명 → 1,225명

※ 인력 확충 현황

구 분	계	사회복지직		세무직 (소득세 전환)	비 고
		사회복지확충	기초생활보장		
확충인원	14명	2명	6명	6명	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(안전행정부) 및 서울시의 「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운영 개선대책」, 「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체제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배치 안내」, 「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세무인력 보강지침」에 따라 복지 및 세무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부시책에 따라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증원 인력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,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체제로의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6명,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14명을 증원함으로써,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,288명에서 1,302명으로 하고, 집행기관의 정원을 1,261명에서 1,275명으로 조정하였음.
-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 및 세무인력을 안전행정부의 「총액인건비 정원책정 기준」 범위에서 정원을 증원하여 대민행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우리구의 2014년도 인건비 편성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책정한 영등포구 총액인건비 1,024억 3,677만원 대비 96.8%인 991억 6,043만 4천원으로, 3.2%에 해당하는 32억 7,633만 6천원내에서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. 【붙임 총액인건비 기준 및 2014년도 세출 총괄표 참조】
-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과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,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보여지며,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붙임】

총액인건비 기준 및 2014년도 세출총괄표

□ 총액인건비, 기준인력

○ 근거 : 2014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

○ 현황

▷ 2014년도 총액인건비 : 102,436,770천원

▷ 총액인건비 기준 공무원수 : 1,289명 + 복지직 인력 22명

▷ 우리구 공무원수 (2014.1) : 1,288명

□ 2014년 총액인건비 예산편성 현황 (세출예산서 69p 참조)

(일반회계+특별회계)

(단위:천원)

구분		예산액
총계		99,160,434
101	인건비	81,271,740
	101-01 보수	64,816,927
	101-02 기타직보수	4,930,131
	101-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	11,524,682
204	직무수행경비	2,280,121
	204-02 직급보조비	2,280,121
303	포상금	3,764,475
	303-02 성과상여금	3,764,475
304	연금부담금등	11,844,098
	304-01 연금부담금	9,677,145
	304-02 국민건강보험금	2,166,953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8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4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,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른 국가정책 추진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순증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표 개정 (안 제2조 및 별표 3)

- 정원의 총수 : 1,288명 ➡ 1,302명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261명 ➡ 1,275명
- 일반직 총계 : 1,282명 ➡ 1,296명
 - 6급이하 소계 : 1,211명 ➡ 1,225명

※ 인력 확충 현황

구 분	계	사회복지직		세무직 (소득세 전환)	비 고
		사회복지확충	기초생활보장		
확충인원	14명	2명	6명	6명	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제22조,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조치 필요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4.3.20.~2014.4.2, 13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288명”을 “1,30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261명”을 “1,27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경력관
비 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연구직공무원

구 분	연구관	연구사
비 율	0% 이내	100% 이상

3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 율	0% 이내	30% 이내	55% 이내	15% 이상	

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	1,302	1,302			
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296	1,296			
일반 직	3급	1	1	-	-	-
	4급	7	5	1	1	-
	5급	61	30	2	11	18
	6급 이하 소계	1,225	1,225			
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
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
연구직 계		1	1			
연구사		1	1	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1,288명</u>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261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302명</u>----- -----.</p> <p>1. ----- : <u>1,275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조례 제3조 [별표 2]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전문 경력관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1%이내</td> <td>6%이내</td> <td>21%이내</td> <td>33%이내</td> <td>31%이내</td> <td>7.5%이상</td> <td>0.5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비 고</p> <p>1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연구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연구관</th> <th>연구사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0% 이내</td> <td>10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3.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5급상당 이상</th> <th>6급 상당</th> <th>7급 상당</th> <th>8급 상당</th> <th>9급 상당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0%이내</td> <td>30%이내</td> <td>55%이내</td> <td colspan="2">15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 고</p> <p>1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	구 분	연구관	연구사	비 율	0% 이내	100% 이상	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	비율	0%이내	30%이내	55%이내	15% 이상		<p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</p> <p>1. 일반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4급 이상</th> <th>5급</th> <th>6급</th> <th>7급</th> <th>8급</th> <th>9급</th> <th>전문 경력관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1%이내</td> <td>6%이내</td> <td>21%이내</td> <td>33%이내</td> <td>31%이내</td> <td>7.5%이상</td> <td>0.5%이내</td> </tr> </table> <p>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 <p>2. 연구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 분</th> <th>연구관</th> <th>연구사</th> </tr> <tr> <td>비 율</td> <td>0% 이내</td> <td>100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3. 별정직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h>구분</th> <th>5급상당 이상</th> <th>6급 상당</th> <th>7급 상당</th> <th>8급 상당</th> <th>9급 상당</th> </tr> <tr> <td>비율</td> <td>0%이내</td> <td>30%이내</td> <td>55%이내</td> <td colspan="2">15% 이상</td> </tr> </table> <p>비 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</p>	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	구 분	연구관	연구사	비 율	0% 이내	100% 이상	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	비율	0%이내	30%이내	55%이내	15% 이상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연구관	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0% 이내	10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0%이내	30%이내	55%이내	15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전문 경력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1%이내	6%이내	21%이내	33%이내	31%이내	7.5%이상	0.5%이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연구관	연구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0% 이내	100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5급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율	0%이내	30%이내	55%이내	15%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□ 조례 제4조 [별표 3]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	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						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등	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등
총 계		1,288	1,288				총 계		1,302	1,302			
정무직		1	1				정무직		1	1			
일반직 계		1,282	1,282				일반직 계		1,296	1,296			
일 반 직	3급	1	1				일 반 직	3급	1	1			
	4급	7	5	1	1			4급	7	5	1	1	
	5급	61	30	2	11	18		5급	61	30	2	11	18
	6급이하 소계	1,211	1,211					6급이하 소계	1,225	1,225			
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		전문경력관 소계	2	2			
별정직 계		4	4				별정직 계		4	4			
6급 상당 이하		4	4				6급 상당 이하		4	4			
연구직 계		1	1				연구직 계		1	1			
연구사		1	1				연구사		1	1			